



제 429회 국회 (정기회)
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

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

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별금의 기금전입비율 하한 상향〉

■ 박정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0202호)

2025. 11.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혜 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출자 : 박정현의원 등 13인
2. 발의일 : 2025. 4. 29.
3. 회부일 : 2025. 4. 3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,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.

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은 2014년 개정으로 100분의 4 이상에서 100분의 6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것인데, 당시 의결된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대안에서는 “향후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10%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”는 소수의견을 명기한 바 있음. 이제 지난 개정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, 현재 대통령령도 그 비율을 100분의 8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법적 기준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.

이에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상향함으로써 향후 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

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보호기금(이하 ‘기금’)에 납입되는 「형사소송법」상 벌금액의 하한을 “100분의 6”에서 “100분의 8”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4조).

현행	개정안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략)	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정부는 「형사소송법」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<u>100분의 6</u>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 <u>100분의 8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- 현행법 제4조는 정부가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라 집행된 벌금(이하 ‘벌금’)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비율을 100분의 8로 정하고 있음.
- 헌법 제30조에서 도출되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‘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

하여'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될 것인바,¹⁾ 범죄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²⁾에 납입되는 벌금액 산정식에 대한 조정을 통해 기금 재원 조달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음.

- 또한, 같은법 시행령에서 이미 100분의 8로 기금에 대한 벌금 전입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경우에도 재원 조달의 차질 등도 없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073

1) 현재 2009헌마354, 2011. 12. 29.

2) 「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